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-52호

「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4년 12월 9 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##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 1. 제안이유

의원 공무국외출장 담당팀 변경에 따라,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사무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실질적인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, 위원회 진행 시 간사의 역할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변경하여,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 변경: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→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팀장(제6조)

### 3. 개정규칙안: 붙임

### 4. 규칙안 예고기간: 2024. 12. 10. ~ 2024. 12. 16.(7일간)

### 5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팩스, 직접 방문, 홈페이지 어느 방법으로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  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: 061-830-5032, 팩스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2.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##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 전단 중 “의회사무과 의정팀장”을 “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회의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두되, 간사는 <u>의회사무과</u> <u>의정팀장</u>이 된다. &lt;중전 제4항 에서 이동 2020.12.18.&gt;</p> <p>⑥ (생 략)</p>	<p>제6조(회의) ① ~ ④ (현행과 같 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<u>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팀장</u>---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
[붙임 2]

##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: \_\_\_\_\_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: \_\_\_\_\_

○ 전 화 번 호: \_\_\_\_\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